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헌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705호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로 한다.

제23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로만 이루어진 경우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로 한다.

제35조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산식 및 제4항 산식중 “1/365”을 각각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제87조제4호중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제4항 및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102조제2항중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8항”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

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02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102조의2를 삭제한다.

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에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

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제2항중 “법 제46조제9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3호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약사법 제2조제9항”을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제116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다”를 “배당소득금액은”으로 한다.

제130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를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81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③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제1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제147조의4 본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로 하고, 동조 단서중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로 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②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기저당담보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3.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

제158조제3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및 사목”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을 말한다.”을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

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
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
억원 이하일 것

제163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각각 “「상
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산식외의 부분 전단중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
률」”로 하며, 동항 산식외의 부분 후단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산식외의 부분 전단중 “공동주택”을 “공동
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
여세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9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
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
법」”으로, “상호신용금고가”를 “상호저축은행이”로 한다.

제5장 제3절에 제20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7조의3(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58조제1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208조의3 및 제20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기부금액
- 3. 기부금 기부일자
-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08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법 제160

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 1.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
 -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이용금액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1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를 각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한다.

제2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201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제1조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한다.

제9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및 동조제10호중 “선원법”을 각각 “「선원법」”으로 하

고, 동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14호중 “방송법”을 각각 “「방송법」”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 관한법률”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으로,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제1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선원법”을 각각 “「선원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대한민국학술원법”을 “「대한민국학술원법」”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을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제5항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5항중 “신탁업법”을 각각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4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24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가목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및 동조제3항 산식외의 부분 전단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

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자산재평가법”을 각각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36조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각각 “「특정연구기관육성법」”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가목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12호다목 및 제15호 단서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라목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7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8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39조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42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45조제4호나목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4호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

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23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며, 동호아목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74조제1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한

다.

제79조의2제1항제1호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 및 동호가목·나목·다목중 “노인복지법”을 각각 “「노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조제4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4조제4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85조제6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87조제1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3항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98조제3항 및 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9조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

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공증인법”을 “「공증인법」”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각각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중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중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9조제4호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을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

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1항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을 각각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7항제1

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을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감면규제법」”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4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9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47조제6항 본문 및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가목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조제16항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제6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중 “소득세법개정법률”을 각각 “「소득세법개정법률」”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1호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부동산중개업법”을 “「부동산중개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2조의3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

별조치법”을 각각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1항 전단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3조제5항제1호중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제9항제2호 및 제10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1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 전단 및 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7조제5항 전단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임대주택법”을 각각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5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167조의4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68조제1항제3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2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69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3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75조의2제1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4항중 “소득세법개정법률”을 “「소득세법개정법률」”로 한다.

제178조의2제2항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78조의3제2항제2호 전단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78조의5제1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제10호 및 제10항제1호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11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14항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5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 단서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83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4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1호의2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91조제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6조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201조의2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07조제1항 단서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7조의2제2항 단서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

고, 동조제1항제2호·제2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0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2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212조의2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213조제3항제1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제4호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16조의2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18조제1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제102조의3·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정지역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추가로 신탁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7319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율이 1퍼센트 포인트(Point)씩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경감시키고, 서민 생활의 지원 및 소형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와 기부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여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
(영 제17조제1항제3호)

(1) 공장 또는 광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
사자와 형평을 유지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
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중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
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를 포함시킴.

(3)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물류산
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영 제23조제7항 신설)

(1) 현재 이자부 투자신탁이나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

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보아 저율 또는
분리과세하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상황임.

(2)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 1인 또는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만 이루어지고 당해 투자자가 사실
상 투자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신탁의 이
익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
니하고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
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과세하도록 함.

(3) 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과 직접투자간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정비(영 제100조제4항 신설)

(1)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합산과세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산과세 사유

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소득금액내역·지분을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신고 서식 간편화(영 제130조제4항 신설)

(1)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도 단순화된 전자신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신고시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전자신고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로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영 제155조의2 신설)

(1)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연로자가 장기주택저당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여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녀와 합가(合家)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3) 장기저당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60세 이상의 연로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영 제162조의3 제3항제4호 신설)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정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가격이 오르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등의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3)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 관리 강화(영 제208조의3 및 제208조의4 신설)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와 연말정산 자료를 생산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발급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기부금 발급내역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자료 발급내역에는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납입액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기부금모집단체 및 금융기관이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발급내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말정산시 사실과 다른 영수증 사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정비(영 별표 2)

(1) 종합소득세율이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됨에 따라 경감되는 근로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월별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조정함.

(3)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한 근로소득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월별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헌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제19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동조제18호(종전의 제17호)중 “제1호 내지 제16호”를 “제1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6조제2항중 “비영리내국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의”를 “단체의”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2호 산식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기부금”을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산식중 “정치자금기부금”을 “문화예술진흥기부금”으로 하며, 동항제3호 산식중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를